[붙임]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재 협 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1. 9.

주식회사 보배산업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1. 사업내용

- ㅇ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ㅇ **면　　적** : 801,515㎡
- ㅇ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보배산업
- ㅇ **승인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ㅇ **사업기간** : 기준년도 2003년, 목표연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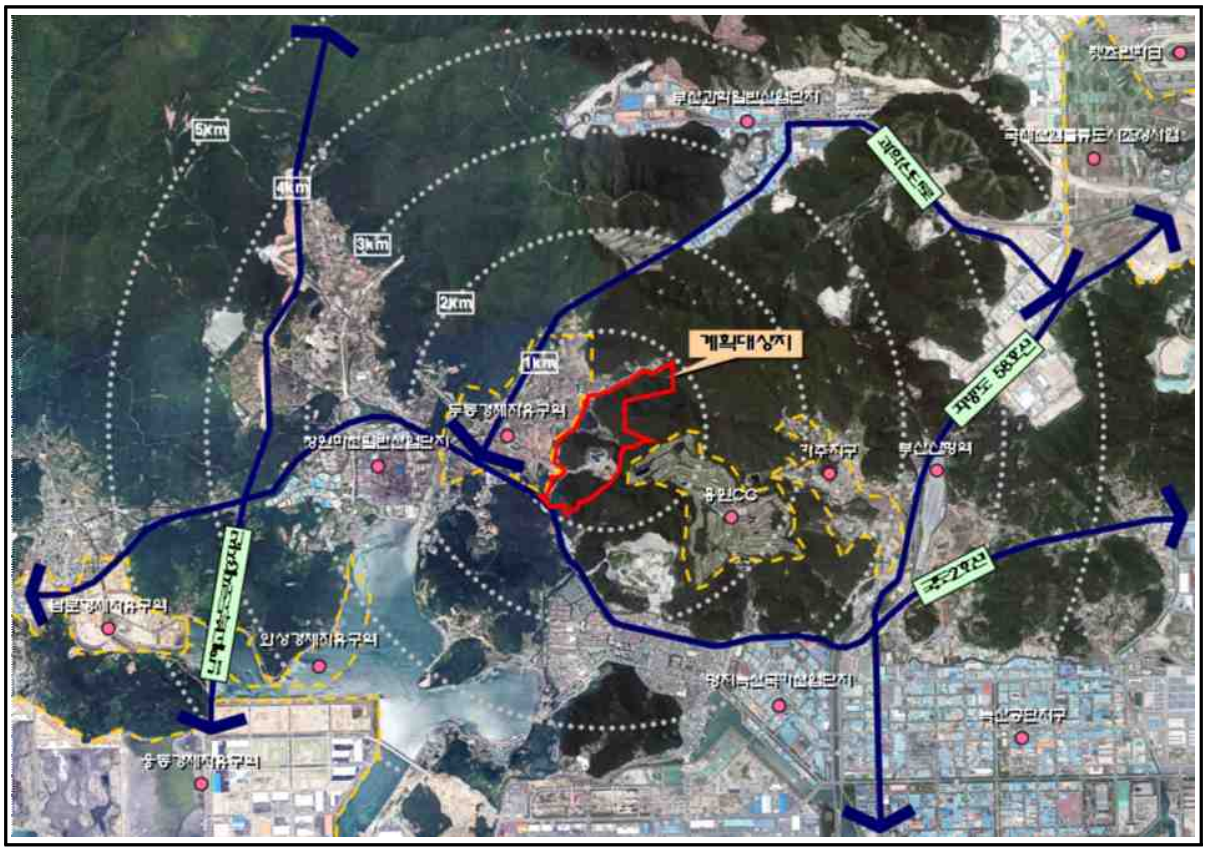

【위 치 도】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가. 공 고

○ 신문공고 : 한겨레신문(중앙일간지), 창원일보(지방일간지)

○ 공고일자 : 2021년 6월 11일

나. 공 람

○ 공람기간 : 2021년 6월 11일 ~ 7월 9일

○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주민의견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열람 후 의견등록

다. 주민설명회

○ 일 시 : 2021년 6월 23일(수) 14:00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라. 의견제출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 주 민 : 의견없음

○ 관계 행정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경상남도(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창원시(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환경위생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토지환경과)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5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801,515㎡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보배산업
   마. 사업기간 : 기준년도 2003년 / 목표연도 2023년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6. 11. ~ 2021. 7. 9.
   나.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초안 요약서(공람장소 비치)
   라. 공고·공람 사실 게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bjfez.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1년 06월 23일(수요일) 14:00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다. 주 관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출시기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 비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시)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등록
   다. 제출내용 :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요구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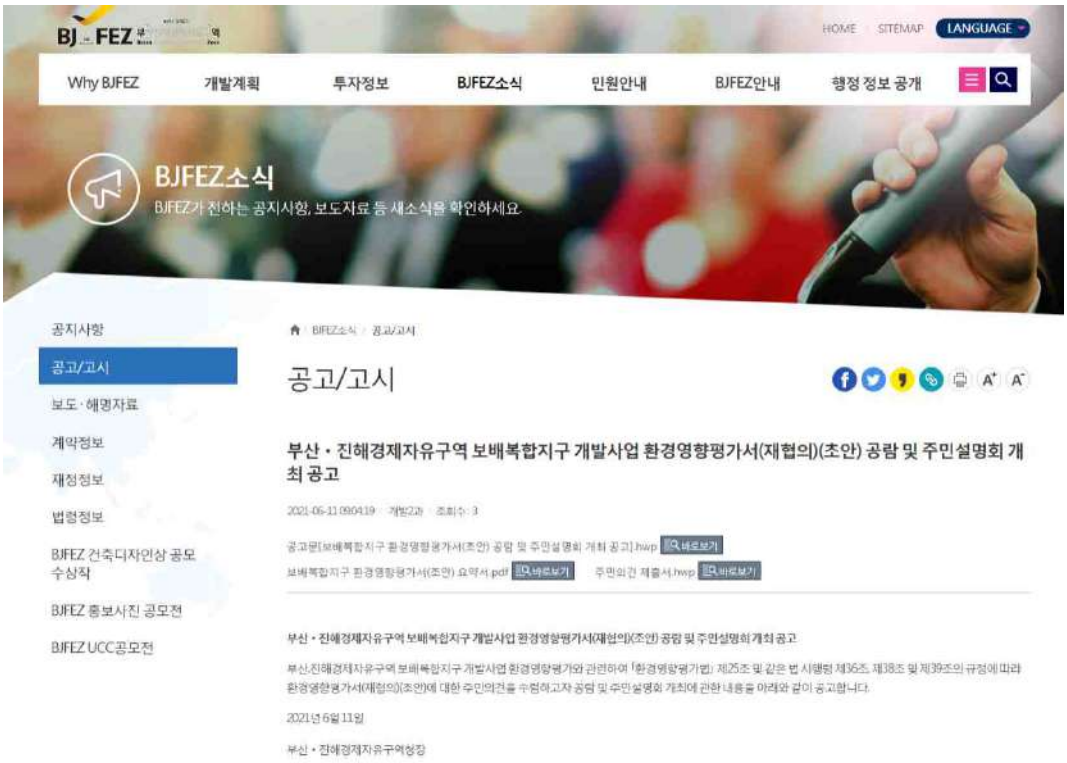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인터넷 공고】

▣ 한겨레신문

2021년 6월11일 금요일 한겨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5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801,515㎡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보배산업
마. 사업기간 : 기준년도 2003년 / 목표연도 2023년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6. 11. ~ 2021. 7. 9.
나.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초안 요약서(공람장소 비치)
라. 공고·공람 사실 게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 : //www.bjfez.go.kr)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 : //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1년 06월 23일(수요일) 14 : 00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다. 주 관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출시기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 비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시)에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 : //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등록
다. 제출내용 :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요구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일보

5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5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801,515㎡
라.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보배산업
마. 사업기간 : 기준년도 2003년 / 목표연도 2023년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6. 11. ~ 2021. 7. 9.
나. 공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정책과,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초안 요약서(공람장소 비치)
라. 공고·공람 사실 게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s://www.bjfez.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1년 06월 23일(수요일) 14:00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다. 주 관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출시기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 비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게시)에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등록
다. 제출내용 :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요구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5-320-5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신문공고】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주 민 설 명 회

주 민 설 명 회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주 민 설 명 회

【주민설명회 개최사진】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① 사 업 명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② 사업장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③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보배산업		
④ 설명회장소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설명회 일자	2021.06.23.

일련번호	참 석 자			코로나19 대비 확인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체 온	관련증상
1					
2					
3					
4					
5					
6					
7					
8					
9					
10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① 사 업 명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② 사업장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③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보배산업		
④ 설명회장소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설명회 일자	2021.06.23.

일련번호	참 석 자			코로나19 대비 확인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체 온	관련증상
1					
2					
3					
4					
5					
6					
7					
8					
9					
10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① 사 업 명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② 사업장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③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보배산업		
④ 설명회장소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설명회 일자	2021.06.23.

일련번호	참 석 자			코로나19 대비 확인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체 온	관련증상
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	[illegible]			[illegible]	
3	[illegible]			[illegible]	
4	[illegible]			[illegible]	
5	[illegible]		0430	[illegible]	
6					
7					
8					
9					
10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주 민 설 명 회 참 석 명 부

① 사 업 명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② 사업장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③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보배산업		
④ 설명회장소	진해구 두동 1531번지 두동지구 내 학교용지	설명회 일자	2021.06.23.

일련번호	참 석 자			코로나19 대비 확인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체 온	관련증상
1	[redacted]				
2					
3					
4					
5					
6					
7					
8					
9					
10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가. 주 민

○ 공람·공고기간 및 주민설명회 시행 중 별도의 주민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나. 관계 행정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경상남도(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창원시(환경정책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환경위생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토지환경과) 의견회신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가. 총 괄 ○ 본 사업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의 재협의를 진행하는 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아래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겠음.	
	○ 본 사업계획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08.07) 시 원형보전지역이었던 지역의 약 70%를 개발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 생태계 내 동·식물의 생육, 이동 및 확산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대상지 남측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남측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신갈나무군락 및 소나무군	○ 기 협의된 연구시설부지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동아학숙의 교육여건 변화(학생수 감소, 교사확보율 100% 초과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 불필요 등) 및 기 계획된 연구시설부지의 개발타당성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음. -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행정력낭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저해되었음.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율 95.7%,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락으로 구성된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의 대부분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와 중첩되는 지역임(평가서 431쪽) - 사업대상지 남측 개발 예정부지는 204고지를 포함한 산 정상부를 포함하고 있어, 배후 능선과 인접한 지역까지 개발이 예상됨	87.4%, 202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개발계획 수립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청, 경상남도, 중앙부처 협의 및 산업통산자원부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변경)을 승인(산자부고시 20-191호, 20.11.18) 하였음. (평가서 초안시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보완과정에서 남측부 산업시설용지를 일부 축소하여 녹지로 존치하였으며, 평가서 본안시 추가 검토토록 하겠음. ○ 개발계획 수립시 보배복합지구 및 인근 두동지구 접근성을 연계하여 여가,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3개소 및 공공업무(공공도서관 등), 유치원 부지 등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음. ○ 개발계획 수립된 보배복합지구의 총 사업면적 대비 공원, 녹지 비율은 경제자유구역내 타 개발지구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나. 입지의 타당성 1) 동・식물상 ○ 개발부지 확대 최소화 - 금회 사업계획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대상지 남측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회 제시된 다른 개발 예정부지 또한 최소한으로 확대하여 개발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경사도 20°이상, 식생보전등급 III 등급 이상이 중첩되는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은 원형을 보전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		
	○ 생태계연결성 검토 - 동 사업지구의 개발은 인접지역의 기 개발사업(두동경제자유구역, 용원레저지구 등)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생태계 연결성 확보 및 야생동물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영향은 야생생물 서식지의 질적 저하와 개체군의 교란으로 이어져 생물종	- 생태계 연결성 확보 및 야생동물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계획하겠음. ·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영향 저감시설인 생태측구 및 침입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의 안정적인 서식과 생존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저감방안 검토	방지 울타리, 인공둥지, 돌무더기 및 나무쌓기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하계(7~8월)*에 계획된 현지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생태계 영향과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생물 분류군별, 각 법정보호종별로 제시 * 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등과 관련하여 생물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조사	· 생물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하계(8월)에 생태계조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자연생태계 영향과 변화파악 및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생물 분류군별, 각 법정보호종별로 제시하겠음.	
	· 추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야생동물의 이동로 단절 여부를 파악하고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생태영향 저감 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제시	· 추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야생동물의 이동로 단절여부 파악 및 영향을 저감토록 생태영향 저감시설인 생태측구 및 침입방지 울타리, 인공둥지, 돌무더기 및 나무쌓기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법정보호종 보전방안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32종(수달, 담비, 황조롱이 등)의 법정보호종이 출현한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를 통해 삵과 담비가 사업지구 인근 약 300m 내외에서 발견되었고, 이들의 행동권과 이동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지구 내부를 서식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평가서에서는 일반적인 저감 방안만을 간략하게 제시함	- 법정보호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법정보호종별로 수립하겠음.	
	·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현지조	· 생태계 추가조사(8월) 결과를 검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사 결과를 토대로 종별 특이적인 부분, 서식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적인 저감방안(연결성 확보 방안, 모니터링 계획, 사후환경조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두동천에서 수달이 확인되었고, 다양한 수조류와 육수생물이 하천을 근간으로 서식하고 있어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육수생물 감소, 양서·파충류 및 조류의 서식지 훼손, 수달 등 야생생물의 먹이원 감소 및 서식지 교란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사유출 등과 관련된 영향을 수생태계 보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수환경과 수생태계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토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별 특이적인 부분, 서식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성 확보 방안(생태측구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모니터링 포함)을 수립하겠음. - 토사유출 등과 관련된 영향을 수생태계 보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수생태계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및 오탁방지막 등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생태계서비스 기능 훼손 최소화를 위한 훼손수목 추가이식 -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저감하는 목적은 산림수목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부양서비스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산림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공공재로서 성격이 있으며, 산림을 최대한 유지·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훼손 수목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은 불가피하나, 생태계서비스 기능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훼손수목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이식계획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이식수목량 재산정 시 총 훼손 수목량의 10% 이상을 이식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 사업부지 내 훼손수목 중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추가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 함 *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류, 서어나무, 소나무 등	- 훼손수목 중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 많은 수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겠음.	
	○ 육상동물 보전방안 - 부지조성에 따른 지역 생태계 및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저감 대상 생물종 또는 생물군, 저감 목표 및 내용, 저감시설물 및 설치 정보를 도면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생태측구, 인공둥지, 먹이원 및 소형동물 미소서식처, 돌무더기, 나무쌓기, 침입방지 울타리, 유도울타리 등 구체적인 저감시설물의 설치 지점, 규모, 개수, 제원, 규격 등을 도면과 함께 제시 · 생태영향 저감을 위해 계획한 생태연못 조성(226쪽)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시공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 생태계 및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대상 생물종 또는 생물군, 저감목표 및 내용, 저감시설물 및 설치 정보를 도면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저감시설인 생태측구 및 침입방지 울타리, 인공둥지, 돌무더기 및 나무쌓기 등 저감시설물의 설치 지점, 규모, 개수, 제원, 규격 등을 도면과 함께 제시하겠음. · 생태영향 저감을 위한 생태연못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겠음.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계획 - 현지조사를 통해 생태계교란 식물(환삼덩굴)이 출현한바, 선제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 식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향후 공사 진행에 따라 환삼덩굴을 비롯한 다양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출현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시된 관리 방법에 따른 신속한 제거(제거결과 제시 포함), 서식 실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 식물 조사 및 제거·관리 시 「생태계교란 식물 현장조사표」 및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관리대장」 양식* 활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도로건설 사업장에서 외래식물과 생태계교란 식물 현장관리(국립생태원, 2020)」 참고	- 생태계교란 생물의 출현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시된 관리방법에 따른 신속한 제거, 서식 실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행토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겠음.	
	○ 야간조명 및 소음 저감방안 - 공사 및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야간조명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 지역 생물종의 경우 조명, 차량소음, 진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3),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기법개발 연구」 참고	-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토록 가로등 및 공원등의 야간조명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운영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겠음.	
	2) 대기질(악취 포함) ○ 대기환경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계획지구는 입지여건 상 두동지구와 인접하여 있으며, 두동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을 포함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한 약 45만㎡ 규모의 주거시설이 조성될 예정임. 이에 따라 계획지구 내 산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따른 대기질 및 악취 측면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지구 내 산업시설과 두동지구 내 조성예정인 주거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지형적 차폐 여부 포함)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격거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산업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	·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와 두동지구 주거용지의 충분한 이격거리(최소 120m)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지구 조성부지와의 높이차, 완충녹지 식재 등을 통해 지형적 차폐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또한, 산업시설용지 운영에 따른 두동지구 주거용지에 미치는 대기질(악취)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주거시설과 인접한 산업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	·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인접한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B4블럭 1개 획지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일부 제한하는 등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주거시설 인접지역 외 산업시설의 경우에도 운영 시 발생하는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업체 유치계획*을 수립 * (예)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주제한, 악취물질 배출시설 입주제한 등	·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인접한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B4블럭 1개 획지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일부 제한하는 등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계획지구 내 유치원을 조성할 예정이나, 산업시설의 운영으로 배	· 개발계획 수립시 보배복합지구내 유치원은 인근 두동지구내 부족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조성이 필요할 경우 유치원과 인접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산업시설과 최대한 이격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한 영·유아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음. · 유치원 입지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으로 기 조성된 두동지구 상업지역내 건축행위 제한여부를 고려하였으며,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산업시설과 최대한 이격 및 공원·녹지 등과 연접하게 계획하였음.	
	○ 현황분석 - 2021년 3월 실시한 1회 측정결과(A-1, A-2 지점)를 통해 계획지구에 대한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만을 통해 계획지구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2계절 이상의 추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계절별 현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영향예측 시 활용하여야 함 · 현황조사 시 기상개황을 명시하고, 대기질 추가 조사기간은 반드시 맑은 날을 대상으로 선정 - 금회 평가서의 경우 악취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문헌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대기질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7월), 악취의 경우 최신 문헌조사를 추가하여 현황분석 및 영향예측시 활용하겠음. · 현황조사 당시 기상개황을 명시하고, 대기질 추가 조사기간은 맑은 날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악취 항목에 대한 문헌조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음.	
	○ 영향예상 대상범위 및 조사 - 대기질 및 악취에 민감한 주요 영향예상 대상 시설현황을 이격거리를 포함하여 표로 열거하였으나(267쪽), 지형적 차폐여부, 가구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	- 대기질 및 악취에 민감한 주요 영향예상 시설에 지형적 차폐여부 및 가구 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설현환을 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시하여야 함		
	○ 운영 시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 - 연료사용량과 유발교통량 외 유치업종의 공정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유치업종별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PM-10, PM-2.5, NO_2, SO_2 등)을 추가 산정 · VOCs 배출시설이 입지할 경우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 추가	· 유치업종별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로 산정하겠음. · VOCs를 배출시설이 입지한다는 가정하에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을 추가로 실시하겠음.	
	○ 운영 시 저감대책 - 금회 평가서의 경우 운영 시 저감대책으로 물질별 일반적인 저감시설의 종류 및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 및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위치한 계획지구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운영 시 면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한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산업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운영시 입주업종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PM-10, PM-2.5, SO_2, NO_2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방지시설을 물질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저감효율 포함) · 인접한 주거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고효율의 저감시설 설치	· 운영시 업종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최적방지시설을 대기오염물질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저감효율, 방지시설 종류 등) 수립하겠음. · 인접한 주거시설 등을 고려하여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인접한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VOCs 배출시설이 입지할 경우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B4블럭 1개 획지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일부 제한하는 등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입주업체에 가급적 고효율의 저감시설 설치 권고할 계획임. · VOCs를 배출시설이 입지한다는 가정하에 배출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악취 저감대책 - 본 사업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입예정인 탈취시설의 운전조건 및 효율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지구 내 유치업종(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고려한 최적 탈취시설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 탈취시설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사업장에서 적정한 탈취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임.	
	○ 완충녹지 조성계획 - 계획지구 내 및 경계부에 계획된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길이, 폭 등의 제원을 구체적인 표 또는 도면 등을 활용하여 작성 - 특히 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 계획지구 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계획된 녹지의 제원(길이, 폭(최소~최대), 면적)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겠음. - 두동지구 주거시설과 사업지구 산업시설용지, 사업지구 유치원과 사업지구 산업시설용지 간의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유지목표농도 설정 -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및 악취에 대한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대응방안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유지목표농도를 대기환경기준 및 악취방지법을 참조하여 설정하겠음. -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 공사시 : 살수 강화 등의 추가 저감방안 계획수립 · 운영시 : 사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 승인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및 악취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2지점의 선정 사유를 작성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 시 조사지점을 추가하여야 함 · 선정된 조사지점을 도면을 활용하여 명확히 작성 - 운영 시 대기질 및 악취의 조사주기를 반기 1회로 계획하였으나, 계획지구 주변 주거시설,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로 강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및 악취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2지점에 대하여 선정 사유를 제시하고, 영향예측을 진행중에 있어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조사지점 재검토하겠음. · 선정된 조사지점을 도면상에 나타내어 명확히 작성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분기 1회로 조사주기 강화	
	3) 온실가스 ○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운영시에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공원조성에 의한 흡수량에 산정	- 2021년도판 한국전력통계 참조하여 예상 전기사용량을 산정하고, 간접배출원(전력부문) 산정식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겠음. - 수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흡수량 산정식 참조하여 공원조성에 의한 흡수량을 산정하겠음.	
	○ 저감방안 - 신재생 에너지, LID, 빗물 재이용	- 사업지구 산업유치계획내 신재생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등에 대하여 수립·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에너지인 태양광공급업이 가능한 D35를 포함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빗물 재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4) 수질 ○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계획 - 사업지구에 임시침사지를 설치할 계획(389쪽)이나 임시침사지의 저감효율(포착률), 수용하천의 부유물질(SS) 가중농도 등이 제시되지 않아 토사유출 저감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침사지 설계 시 사업지구의 토사를 대상으로 입도분석을 실시하고, 수용하천의 SS 가중농도를 고려하여 침사지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함 · 임시침사지 등 저감시설에 의한 수용하천의 SS 가중농도 예측결과를 토대로 SS 유지목표농도 설정	- 침사지 설계시 사업지구의 토사를 대상으로 입도분석 실시 및 수용하천의 SS 가중농도를 고려하여 침사지의 용량을 결정한 재해영향평가 자료(개발중 입경별 포착률 계산자료 및 저감대책 제원 등)를 제시하겠음.	
	○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 사업시행으로 인해 증가된 홍수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구저류지를 설치할 계획(401쪽)이나 홍수 저감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홍수유출량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의 효과를 제시하여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유역에 대한 개발 전·중·후의 홍수 수문곡선과 함께 저감시설 설치 후 홍수 수문곡선의 변화를 비교	○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자료(개발전·중·후 홍수유출량에 대한 영향예측, 저감대책 및 수문곡선 자료 등)을 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운영 시 오·폐수처리계획 - 운영 시 발생하는 오·폐수를 동부맑은물재생센터 및 두동지구 내 부관로를 통해 처리하도록 계획(394쪽)하였으므로, 오·폐수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여유 용량과 수용 가능여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 후 제시하여야 함	- 실시계획 수립시 보배복합지구내 오·폐수계획을 창원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준공전까지 동부맑은물재생센터에서 수용가능토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5)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사업지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원형보전지역이었으며 개발로 인한 과도한 산지 훼손이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남측을 비롯하여 개발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존치 지역(원형보전지역) 중 298,384㎡의 면적이 개발되고 있으며, 추가 개발지의 상당 부분이 표고차가 매우 크고(사업지구 표고차 174m) 급경사지(경사도 20° 이상)를 이루고 있어 옹벽 설치 등으로 인한 산지 경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업지구 남측의 산업시설용지는 배후 능선과 인접한 지역까지 개발되고(569, 573쪽) 있으며 사업지구 서측의 두동지구는 주거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지구의 산지 훼손이 직접적으로 조망되어 경관적 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 협의된 연구시설부지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동아학숙의 교육여건 변화(학생수 감소, 교사확보율 100% 초과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 불필요 등) 및 기 계획된 연구시설부지의 개발타당성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음. -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행정력낭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저해되었음.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율 95.7%,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87.4%, 202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개발계획 수립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청, 경상남도, 중앙부처 협의 및 산업통산자원부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변경)을 승인(산자부고시 20-191호, 20.11.18)하였음. (평가서 초안시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보완과정에서 남측부 산업시설용지를 일부 축소하여 녹지로 존치하였으며, 평가서 본안시 추가 검토토록 하겠음. ○ 개발계획 수립시 보배복합지구 및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인근 두동지구 접근성을 연계하여 여가,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3개소 및 공공업무(공공도서관 등), 유치원 부지 등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음. ○ 개발계획 수립된 보배복합지구의 총 사업면적 대비 공원, 녹지 비율은 경제자유구역내 타 개발지구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수요를 통한 개발 규모 - 사업지구의 유치업종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에 대한 수요예측과 실수요업체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산업시설 수요 예측과 근거를 명시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발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 제2017-119호)에서는 개발 후에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수요조사를 의무화(제7조의 2)하고 있음 · 또한 승인권자는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제9조의 2)하고 있으므로 사업지구가 지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제시 · 수요조사에 따른 유치업종과 실제 사업지구의 유치업종 계획과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제시 ※ 실수요자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보배복합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등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산업입지의 개발계획 관한 통합지침」제7조의2(수요조사 기준 등),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원활하고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수요예측분석과 유치업종프로세스를 거쳐 산업유치계획 수립하였음. ○ 산업시설용지 수요예측 - 창원시 산업시설용지의 개발비율 91.9%(전국 평균 87,1%), 분양율 100%로 가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절대부족 (2020.5,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창원시 기업의 타지역 이전 의사의 주요 이유가 산업시설용지 부족, 높은지가·임대료로 조사되어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시급(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2015) -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상 보	

<table>
<tr><th>의견제출자
(기관)</th><th>검토의견</th><th>반영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td><td>배복합지구가 위치한 웅동생활권은 장래 8.964㎢의 산업시설용지 추가 공급 계획
○ 유치업종 선정프로세스
- 유치업종 선정은 1.입지수요 분석(창원지역, BJFEZ 산업구조 적합도 분석), 2.산업특화도 분석(창원, 경남지역 산업특화도 분석), 3.상위계획 연계분석(BJFEZ 미래발전방향, 상위계획 연계분석)등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산자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음.
(산자부고시 20-191호, 20.11.18)
- 2020년 6월 산업시설용지내 입주의향 기업 수요조사 결과 총 17개 기업에서 0.312㎢의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배복합지구 산업용지(0.235㎢) 수요 충족
<table>
<tr><th>구분</th><th>입주희망 면적(㎢)</th></tr>
<tr><td>계</td><td>0.312</td></tr>
<tr><td>전자부품, 컴퓨터 등(C26)</td><td>0.090</td></tr>
<tr><td>의료, 정밀 등 (C27)</td><td>0.035</td></tr>
<tr><td>전기장비제조업 등(C28)</td><td>0.118</td></tr>
<tr><td>기타기계 장비제조업 등(C29)</td><td>0.069</td></tr>
</table></td><td></td></tr>
<tr><td></td><td>○ 유치업종 제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유치제한 업종(중분류)과 입주 제한 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함</td><td>-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인접한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B4블럭 1개 획지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일부 제한하는 등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td><td></td></tr>
</table>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6) 토양 ○ 운영 시 영향예측 -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백서'(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5),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등 문헌을 분석하여 공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함 · 조사 문헌은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관내가 아닌 전국에 대한 결과를 대상으로 실시 ·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백서'에서는 업종별 토양오염발생 물질, 빈도, 원인 등을 파악 · '토양측정망 운영결과'는 측정목적별 분류상 '오염영향지역(산업단지)'에 대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조사지역종류 분류상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지역'에 대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한 상세한 조사 및 분석(유치업종, 오염원, 오염도, 물질, 오염원인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	- 문헌을 분석하여 공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하겠음. · 사업지구가 위치한 관내가 아닌 전국 결과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겠음. · 업종별 토양오염발생물질, 원인 등을 조사 및 파악하여 제시하겠음. · '토양측정망 운영결과'는 측정목적별 분류상 '오염영향지역(산업단지)'에 대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조사지역종류 분류상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지역'에 대한 결과를 중점 분석하여 제시하겠음. ·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에 입주예정인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 비옥토(표토) 보전 계획 수립 - 비옥토(표토)는 단순한 환경매질로서의 토양이 아닌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자원의 보전 및 활용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비옥토의 유실을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비옥토의 양 및 면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비옥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 중 활용할 수 있는 비옥토의 양 및 면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비옥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비옥토 발생(채취 가능) 지역, 비옥토 재활용 가능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 비옥토 적치장 조성 및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립하고 도면으로 제시	· 비옥토 발생지역과 적치장 등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겠음.	
	· 향후 비옥토 사용가능·필요 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면적 및 토심을 고려한 비옥토 재활용 필요량 산정	· 비옥토 사용가능·필요 지역(공원, 녹지 등)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비옥토 재활용 필요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 현재 토지이용 현황, 절·성토 계획, 비옥토 재활용 필요량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비옥토가 발생하는 지역(임야, 밭 등을 대상으로 하고 논은 제외)을 결정하여 도면으로 제시하고 비옥토 채취 가능량을 산정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비옥토 발생지역을 결정하여 채취 가능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 비옥토 채취량, 적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비옥토 적치장 면적을 산정하고, 공사 중 적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으로 제시	· 비옥토 적치장은 공정상 지장이 없는 장소 및 비옥토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일부 공장용지에 임시적치할 계획으로, 비옥토 확보 계획을 제시하겠음.	
	· 채취 가능량의 전량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 비옥토 필요 지역에 공급하는 등 기타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고려	· 비옥토 필요량에 맞도록 비옥토 채취량을 결정하여 계획하겠음.	
	- 비옥토의 채취, 보관,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아래 사항을 반영하	- 검토의견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여 수립하여야 함 · 비옥토 채취량, 적치장 반입량·반출량, 보관량,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등) · 비옥토 적치장의 상부 피복 상태, 가배수로 설치 등 조성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 · 재활용된 비옥토량 및 재활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및 사진 등)	· 비옥토 채취량, 적치장 반입량·반출량, 보관량,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음. · 비옥토 적치장의 상부 피복 상태, 가배수로 설치 등 조성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음. · 재활용된 비옥토량 및 재활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산업시설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통보서에 공장 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환경부고시 제2019-97호 별표 참조) 현황을 명시 · 해당 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의 '기초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토양오염 개연성을 조사하는 계획 · 기초조사 결과,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토양환경평가지침'의 '개황조사' 방법을 따라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계획 · 조사항목은 해당 시설의 취급·보관 물질을 반영하여 선정	○ 본 검토의견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통보서에 공장 내 설치되어있거나 설치 예정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명시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개별업체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는 불가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된 개별업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관리토록 할 계획	
	7) 소음·진동 ○ 공사 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발파 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진동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해서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속도 환경목표기준으로 0.3kine을 적용(528쪽)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정온시설의 상태(노후정도, 균열 등)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파진동에 취약한 정온시설이 있을 경우 발파시행에 따른 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된 발파진동속도 환경목표기준(0.2kine)을 적용하여야 함	는 0.2kine을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외 정온시설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목표기준 0.3kine을 적용하여 진동피해를 최소화토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운영 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사업지구 내 공장의 야간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야간운영계획이 있을 경우 야간을 대상으로 한 공장소음 영향을 평가하여 기준(45dB(A))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공장시설 운영에 따른 저주파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저주파 소음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에 근거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공장시설과 유사한 업종에 대한 실측자료 등을 활용	- 사업지구 내 공장이 야간 운영을 한다는 가정하여 야간공장 소음영향을 예측결과 두동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향후 야간 공장 운영에 따른 민원 발생시 개별업체에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기계별 저주파 소음도를 적용하여 공장시설 운영에 따른 저주파 소음 영향을 예측하고, 저주파 소음관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 초과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정온시설명, 주소, 좌표 등)를 명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정온시설명, 주소, 좌표 등)를 명시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8) 위락·경관 ○ 산지경관 보전 - 사업지구 남측의 산업시설 용지는 능선부와 바로 인접한 지역까지 개발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서 조망되어 산지 경관을 크게 훼손할	○ 기 협의된 연구시설부지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동아학숙의 교육여건 변화(학생수 감소, 교사확보율 100% 초과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 불필요 등) 및 기 계획된 연구시설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것으로 판단(569, 573쪽)되므로, 남측의 산업시설용지는 개발에서 제척하거나 원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부지의 개발타당성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음. -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행정력낭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저해되었음.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율 95.7%,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87.4%, 202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개발계획 수립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청, 경상남도, 중앙부처 협의 및 산업통산자원부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변경)을 승인(산자부고시 20-191호, 20.11.18) 하였음. (평가서 초안시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보완과정에서 남측부 산업시설용지를 일부 축소하여 녹지로 존치하였으며, 평가서 본안시 추가 검토토록 하겠음. ○ 개발계획 수립시 보배복합지구 및 인근 두동지구 접근성을 연계하여 여가,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3개소 및 공공업무(공공도서관 등), 유치원 부지 등을 추가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음. ○ 개발계획 수립된 보배복합지구의 총 사업면적 대비 공원, 녹지 비율은 경제자유구역내 타 개발지구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자연경관자원의 현황 - 자연경관 유형별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파악 및 경관자원분류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주변 경관자원을 산지, 하천 등 유형별로 분류 및 현황 검토하여 분류표로 작성・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경관자원의 분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관자원 현황 분석도에 주요 경관자원의 명칭 및 거리를 지도상에 표기	· 경관자원 현황 분석도에 경관자원의 명칭 및 거리를 지도상에 표기하겠음.	
	○ 조망점 선정 및 분석 - 조망점 선정 시,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가시권역에 들어오는 조망점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근경, 중경, 원경) 등을 통해 경관영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북측과 동측에서의 예비조망점을 선정(동측은 용원 CC지점에서의 조망점 검토) · 사업지구 배후 산림과 경관축으로 연결하는 도동소류지 및 하천 경관축을 형성하는 도동천에서의 조망점 추가 · 사업부지 경계부에 나타나는 경사면을 조망할 수 있는 근경의 조망점 추가	- 사업지구 북측, 동측 용원CC, 두동소류지, 두동천, 사업부지 경계부 중 경사면 조망 가능 지점에 조망점 선정하여 가시권분석 후 가시되는 지점은 경관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사업지구내 각 시설용지 사이 녹지 배치 및 경사면 녹화, 수목식재계획 등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음.	
	○ 경관영향 저감방안 - 상실되는 녹지총량과 가치에 대비하여 적절한 공원녹지 및 식재계획이 필요하며, 공원 및 녹지계획은 평면적 제시보다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저감되었다는 경관적 제시 필요 - 두동지구의 세부계획 등과 연계성을 같이 고려하여 경관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공원 및 녹지 배치계획 활용, 사업지구 경계부에 배치하는 녹지로 주변 산림에 대한 경관영향 저감, 시설용지 사이에 배치하는 녹지로 각 시설용지에 대한 경관영향 저감계획을 수립하겠음.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두동지구 토지이용계획을 활용, 사업지구 산업시설용지는 두동지구 산업용지 주변으로 배치, 사업지구 저류지 및 녹지 등은 두동지구 주거용지 변으로 배치하여 경관적 연계성을 확보·계획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절성토에 의해 형성되는 사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내용(구조물 계획, 경사면녹화계획 등)은 단순하고 일반적인 설명들로 단면도, 시뮬레이션 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이 적용된(수목 및 덩굴식재 등) 단면도를 제시하여 경관영향을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사면 녹화공법이 적용된 사면부 단면도를 제시하여 경관영향 검토를 실시하겠음.	
	○ 경관변화 예측 및 평가 - 경관변화 예측 및 평가하는 경관시뮬레이션 이미지는 동 사업에 의해 생성되는 시설물의 높이 값과 더불어 산지의 7부 능선을 표시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건축물 색채 경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건축물 층수·배치계획을 적용하여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시 7부 능선을 표시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 - 실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변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9) 위생・공중보건 ○ 현황조사 - 금회 개발부지 주변 현황조사로서 창원시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있으나(584~594쪽), 산업시설(235,780㎡)을 포함한 금회 복합지구 개발・운영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주변 반경 2㎞ 내의 기존 오염원 및 수용체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오염원 특성,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 개발부지와 이격거리 등 조사	· EIASS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사업지구 주변 반경 2㎞내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조사하여 기존 오염원 특성,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 개발부지와 이격거리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개발부지 주변 수용체 관련하여 주거지역 규모 및 이를 활용한 잠재적인 노출 인구수 산정(두동지구의 공동주택 개발 규모 등을 반영) · 개발부지 주변 민감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목적의 민감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2021. 04.「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URL: https://eiass.go.kr/hia/search/downSearch.do) 등 참조 - 주변의 소규모 공장 및 마천 일반산업단지 등의 현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물질들에 대한 현황농도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 현황농도 조사방법과 더불어 측정 관련 검출한계(단위:㎍/㎥)를 명시하여 현황농도 측정값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활용에의 적정성 제시 · 현황조사 관련 측정 시험성적서 첨부	· 두동지구 환경영향평가서 및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별 인구수' 조사하여 운영시 인구수를 제시하겠음. · '노인복지시설 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아동복지시설 현황' 조사하여 민간계층 인구수를 제시하겠음. · 현황농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향예측시 현황농도를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겠음. · 현황농도 조사방법과 더불어 측정 관련 검출한계를 명시하여 현황농도 측정값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활용에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현황조사 관련 측정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겠음.	
	○ 위해성 평가 및 이를 고려한 적정 저감방안 수립 - 영향 예측지점으로 10개 지점을 단순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596쪽), 건강영향 범위인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에 주변 수용체 현황조사 결과(주거규모 등) 및 현황농도 측정지점 등을 고려	- 건강영향 범위인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에 주변 수용체 현황조사 결과 및 현황농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여야 할 지점 재선정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하여 중점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여야 할 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평가서(초안)에서 실시한 위해성 평가 내용이 미흡하므로(609~622쪽),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저감방안(저감시설 설치, 입주업체 제한 등)을 수립하여야 함		
	· 평가 대상물질별 위해도 등가곡선을 추가하여 위해도 초과지역과 주거지역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저감방안 수립에 활용	· 평가 대상물질별 위해도 등가곡선을 추가하여 위해도 초과지역과 주거지역과의 관계를 확인하겠음.	
	· 현황농도, 금번 사업으로 인한 가중농도,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중농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건강기준(10^{-5})에의 기여도를 산정·비교하여 제시	· 현황농도, 가중농도(사업지구, 주변 개발사업)를 명시하고 기여도를 산정·비교하여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겠음.	
	· 현황농도 및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여도가 건강기준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번 사업으로 위해도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을 입주 제한하는 적극적인 저감방안 마련	· 현황농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벤젠에 대해(609~622쪽), 저감시설 설치 및 재평가를 통한 기준 만족여부를 제시하였으나(625~628쪽), 일반적으로 PRTR 배출량은 저감시설 적용 후의 배출량이므로 추가 저감방안(배출량 관리, 노출 관리, 인체건강 관리 등)을 마련	· 영향예측 결과에 따른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10) 기타 ○ 기 회신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08.07, '14.06)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 회신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제시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해당법령 및 의제처리되는 법령까지 모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재협의 대상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를 해당법령 및 의제처리(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되는 법령까지 모두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본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별표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겠음.	
	○ 금회 사업시행시 개별법에 따른 조치 사항(개별 법령에 따라 수반되는 신고사항*, 개별법 및 조례 등에 다른 이행사항 등)과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추가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 등	○ 사업시행으로 인해 개별법에 따른 조치 사항(개별 법령에 따라 수반되는 신고사항, 개별법 및 조례 등에 다른 이행사항 등)과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추가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서 초안 대비 달라진 사항은 표, 그림 등을 통해 별도로 비교·제시하여야 함 - 검토의견 반영결과(조치내용)를 표로 작성 시 '반영·미반영·일부	○ 평가서 작성시 평가서 초안 대비 달라진 사항은 표, 그림 등을 통해 별도로 비교·제시하겠음. - 검토의견 반영결과(조치내용)를 표로 작성시 '반영·미반영·일부반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반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미반영, 일부반영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또한, 단순히 '검토하였음', '반영하였음'으로 표기하는 대신에 해당 반영결과를 요약·제시하여야 함	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미반영, 일부 반영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단순히 '검토하였음', '반영하였음'으로 표기하는 대신에 해당 반영결과 요약·제시	
	○ 저감방안 수립 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명시하여야 함. 끝.	○ 저감방안 수립시 구체적인 이행계획 명시하겠음.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가. 대기보전담당(대기질·악취 분야)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예측결과, SO_2, NO_2, CO, PM10 등은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PM2.5는 연간 예측 시 연간 평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사업지역 주변 주거지역, 요양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초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진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악취 등에 의한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PM2.5 항목의 경우 현황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가중되는 농도는 미미하여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향후 사업진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대기질, 악취 등에 의한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아울러 사업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검토·조치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공고공람(21.06.11.~07.09.)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21.06.23.)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검토·조치하겠음.	
	나. 생활환경담당 (소음·진동·비산먼지 분야) ○ 본 사업계획은 기존 R&D용지에서 업무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	○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하고자 하므로, 기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음·진동 등 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 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공고공람(21.06.11.~07.09.)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21.06.23.)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원 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가. 수질정책담당 ○ 사업계획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관정 폐공 또는 개발·이용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	○ 사업지구 내 신고 또는 이용중인 지하수는 없으나(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확인), 향후 공사시 관정 폐공 등의 사유 발생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나. 수질보전담당 ○ 본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관한 건으로, 기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 변경에 따른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창원시와 협의할 것	○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창원시와 협의토록 하겠음.	
	다. 수계관리담당 ○ 계획변경에 따른 향후 공사 및 운영시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오염부하가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	○ 본 사업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으로, 공사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운영시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이행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토록 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업무시설 등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창원시에 신고하여야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업무시설 등을 신축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토록 권고하겠음.	
	라. 상수도담당 ○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수공급계획 관련 변경 시 해당시·군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 용수공급계획 관련 변경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상수도부서와 협의하겠음.	
	○ 당초 협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마. 하수도담당 ○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으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변경될 경우 창원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하수발생량 변경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수도 설치는 창원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 등을 신축·개발하려는 경우, 중수도 설치를 권고하겠음.	
	○ 당초 협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재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하겠음.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사업시행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해당법령에 따라 건설자재는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사용토록 권장하겠음.	
	○ 발파 등 고소음·고진동을 유발하는 공정이 수반되므로 인근 건물의 균열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전 영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최적의 방음·방진대책을 수립하고 사람이나 가축,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또는 환경분쟁에 대비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0.2kine을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외 정온시설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목표기준 0.3kine을 적용하여 진동피해를 최소화토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발파전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최적의 방음·방진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또는 환경분쟁에 대비하겠음.	
	○ 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영향이 예상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창원시 (환경정책과)	가.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계 영향 등 제반사항 및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시 주변 자연환경과 생태계 영향 등 제반사항 및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나.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 특성 및 사업시행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감안하여 동·식물상 평가범위를 확대하였음	○ 대상지역은 계획특성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평가협의회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감안하여 범위를 최대한 확대·설정하겠음.	
	2.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 p.105~138에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계획의 범위를 수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지점 및 영향예측의 범위·거리를 수치로 표기하겠음.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 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 공고공람(21.06.11.~07.09.)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21.06.23.)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따른 공개절차를 현재 진행하고자 함.	
	4. 환경영향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및 향후 주변에 예정된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비산먼지와 공사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공사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음.	
	○ 강우로 인한 토사 및 오염물질 등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강우로 인한 토사 및 오염물질 등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을 위하여 공사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운영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기존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시 저수지(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일정량 유입의 수량확보 및 공원결정 조서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지구 서측 저류지의 경우, 저수지(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 일정량 수량이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류지 동측으로 수변공원(공원2)는 공원결정 조서에 반영되어 있음.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등을 투수성 포장재로 시공하는 등 빗물침투시설 및 저류시설 설치를 권고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계획 등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음.	
	○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 등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등을 투수성 포장재로 시공하는 등 빗물침투시설 및 저류시설 설치를 권고함.	○「물재이용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업무시설 등 신축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계획 등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계획하겠음.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사항으로, 상위 ZEB등급으로 인증받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건축물 외 일반건축물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요소를 반영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함.	○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상위 ZEB등급으로 인증받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일반건축물 또한 법적 의무사항 외 에너지 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음.	
	○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경우는 투명창에 프린트 패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설치 등 야생조류 충돌저감 대책 실시를 권고함.	○ 외벽이 유리창으로 된 건물이나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투명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설치 등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권장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존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존치지역 및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음.	
	5. 기 타 ○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음.	
	<추가의견> 가.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한 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 발생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등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득하겠음.	
	○ 해당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사 중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음.	
	나. 비산먼지 ○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 연장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를 득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다. 특정공사 ○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규모의 10% 이상 확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등 기존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공사규모 확대, 특정공사 기간 연장 등 기존 신고사항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득하겠음.	
	라. 토 양 ○ 투입공사 장비의 유류사용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성토재로 사용하는 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함	○ 공사시 투입장비의 유류사용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음. ○ 사업지구는 공사시 외부반입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만약 토양오염 사고 발생 및 공사중 발견되는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공사시 토양오염 사고 발생 및 오염토양 발견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신고하겠음.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검토대상 아님.	○ 사업지구 운영시 동부맑은물재생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바. 환경민원 관련 의견 ○ 공사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방음방진벽 설치, 세륜시설 설치·운영, 공사장 주변의 주기적인 청소, 작업 시간 조정 등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민원이 최소화토록 가설휀스 설치, 세륜시설 설치·운영, 주기적인 청소 및 작업 시간 조정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토록 하겠음.	
	○ 장마철 등 우수기에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및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배수로, 침사지 설	○ 공사시(강우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시(개발중)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치 등 토사유출방지시설 관련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함.		
	○ 사업대상지 인근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2015.06.25.)에 따라 단독, 공동주택 등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현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가 최소 300m 정도로 향후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만약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 배치시 대기, 폐수,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대한 이격되어 배치되도록 하고, 사업장 운영시 환경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기준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외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충분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배치는 주변 단독 및 공동주택과 이격하고자 지구 남측 및 동측으로 배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운영시 사업지구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법적기준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 공사시 또는 운영시 사용하는 장비·연료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방안 및 저소 재료의 사용 등 구체적인 저감대책 명시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 운영시 에너지 이용,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공사시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저탄소 제품 사용 고려, 운영시 온실가스 저감수종 식재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흙 깍기 및 토사반출 등 공사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기상조건 등을 반영한 확산 방향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저감 방안 및 상시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필요. 끝.	○ 공사시 토공사 등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상조건을 반영한 확산방향, 거리 등을 고려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가설휀스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상시 관리를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BJFEZ (토지환경과)	○ 동 사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 될 경우 진해구청에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면밀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대기오염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 해당법령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득하고,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에 미치는 대기오염피해를 최소화하겠음.	
	○ 사업진행시 주변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웅천도요지전시관, 단독주택단지 등 일부 지점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소음발생 장비를 분산 투입하는 등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시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영향이 최소화토록 가설휀스 설치, 소음발생 장비의 분산 투입 등을 통해 소음환경규제기준을 준수토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향후 입주업체 운영 시 배출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제한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입주업체 운영에 따른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업종배치, 저감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절·기상변화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과 마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이 합쳐져 악취세기가 높아질 경우 주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악취방	○ 본 사업계획상 유치업종은 「악취영향을 고려한 악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최종보고서, 2013.6., 환경부」상 악취영향이 큰 업종별 순위(C15>C30>C24>C18>C25>C20>C19>C22>C13)에 포함되지 않는 악취영향이 적은 업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악취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는 주변 주거지와 최대한 이격배치(지구 남측 및 동측)하였으며, 수목 등의 식재계획을 수립하겠음. ○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인접한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B4블럭 1개 획지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일부 제한하는 등 대기질 및 악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운영시 주변지역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질, 소음 및 악취, 건강영향평가(특정대기유해물질 포함) 등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입주업체에 따라 악취 및 공장 소음진동, 대기질 등의 환경적 악영향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적정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주변 주거지와 최대한 이격하고 수목 등의 식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저감하여야 함. 특히 단독주택단지와 거리를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B4는 더 엄격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산업시설용지는 남측 및 동측으로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최대한 이격배치(지형도 표기)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의 수목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음. ○ 두동지구 내 주거시설과 인접한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B4블럭 1개 획지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를 일부 제한하는 등 대기질 및 악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동 사업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우리 과에 제출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법령에 의거하여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처리토록 하겠음.	
	○ 향후,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 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특정지역의 개발) 내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용지 등을 개발하는 복합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이 아님.	

의견제출자 (기관)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 고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투입장비 및 차량의 폐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 과에 신고하여야 함.	○ 공사시 폐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폐유저장소 설치 등)을 수립·이행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시 해당법령에 의거 신고를 하겠음.	
	○ 협의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는 등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분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환경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사업 시행 하도록 바람.	○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환경피해 및 민원분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다. 주민설명회 개최시

○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 5인과의 질의답변

구 분	주요 질의내용	반영내용(현장답변)	비고
주민1	○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달라.	○ 주민피해가 최소화토록 사업진행하는데 노력하겠음.	
주민2	○ 입주업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 현 계획상 입주업종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개 업종이 계획됨.	
	○ 물류시설용지가 계획됐는가.	○ 현재 계획상 물류시설용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민3	○ 산업용지의 향후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 산업용지는 향후 공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임.	
	○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는가.	○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주민4	○ 주진입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사업지구의 주진입도로는 2번국도에서 연결되는 1개노선과 두동지구에서 연결되는 1개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음. ○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여 두동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토록 동선계획 수립하겠음.	
	○ 보배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두동지구에 좋은 영향이 미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	○ 보배복합지구와 두동지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토록 진행할 계획임.	
	○ 공사시 두동지구 주민피해가 없도록 진행해 달라.	○ 공사시 두동지구 주민에 피해가 최소화토록 저감방안 수립 및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임.	
주민5	○ 사업추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	○ 사업추진을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음.	
	○ 2번국도와 사업지구는 인터체인지	○ 현재 계획으로는 평면교차로를 계	

구 분	주요 질의내용	반영내용(현장답변)	비고
	로 연결하는지, 신호등으로 연결하는지.	획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진출·입노선 및 방향 등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음.	
주민3	○ 사업지구 내 연구시설과 두동지구가 연결되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계획해 달라.	○ 사업지구 연구시설용지와 두동지구는 계획고 차이로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우나, 최대한 두동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주민4	○ 지구 내 영구저류지를 잘 조성해서 두동지구 내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조경 등 신경써서 조성해달라.	○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구 내 영구저류지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두동지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공간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음.	